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3년 4월 22일

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의 장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가. 주민자치의 실현과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주민주도의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자체발굴 및 활성화 방안 필요
- 나. 따라서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사업을 심의하고 발전방향 등을 자문하는 “위원회”의 설치, 관련 부서들 간의 유기적인 업무협조를 위한 “행정지원 협의회” 및 민간의 전문성 활용을 위한 “지원센터”등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마을공동체 만들기의 기본원칙을 규정함 (안 제3조)
- 나.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대한 주민의 권리와 책무를 규정함

(안 제4조)

다.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5조)

라.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6조 및 제7조)

마. 마을공동체 행정협의회의 설치·운영을 규정함 (안 제8조)

바. 주민주도의 상향식 마을만들기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을 위해 마을별 주민협의회 설치·운영을 규정함 (안 제9조)

사.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활동을 위하여 행·재정적인 지원 규정
(안 제10조)

아. 목적 외의 사용 시 등에 환수할 수 있는 규정 (안 제12조)

자. 마을공동체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장 직무, 해촉, 회의 등을 규정함
(안 제15조부터 제20조)

차.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23조 및 제24조)

카. 종합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25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4월 29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참조 : 시의회 기획행정전문위원실, 전화032-440-6213, 팩스 032-440-876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

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 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주 소 : ○성 명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4. 참고자료

-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안 1부.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자치의 실현과 지역 공동체의 형성을 토대로 주민이 스스로 지역사회의 변화를 통해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어 내기 위하여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문화·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2. “주민”이란 해당 시, 군, 구에 주소를 가지거나, 해당 시, 군, 구 관내에 있는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와 그 사용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마을공동체”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 공동체를 말한다.
4. “마을공동체 만들기”란 지역의 전통과 특성을 계승 발전시키고 지역이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을 말한다.
5. “마을종합발전계획”이란 마을 일반현황 및 활용자원 등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주민이 주도하여 수립한 마을의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을 말한다.
6. “마을기업”이란 마을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 안정적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 단위의 기업을 말한다.

7.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을 말한다.
8. “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마을공동체 만들기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마을공동체 만들기는 주민 간의 긴밀한 관계형성을 통한 주민공동체 회복을 지향한다.
2. 마을공동체 만들기는 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이 주도한다.
3. 마을공동체 만들기는 주민 및 마을의 개성과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한다.
4. 마을공동체 만들기는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하여 추진한다.
5. 마을공동체 만들기는 환경과의 조화와 차세대와의 공영을 지향한다

제4조(주민의 권리와 책무) 주민은 누구나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참여하는 주민은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

제5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2장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제6조(기본계획) ① 시장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마을공동체 만들기 정책방향
2. 주민주도로 수립한 마을종합발전계획
3.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설치·운영
4. 마을공동체 만들기 협의회 구성 및 운영
5.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 등 민·관 협력체계의 구성·운영
6.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및 지원체계
7. 그 밖에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시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전문가의 자문을 거치거나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7조(연도별 시행계획) ①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마을공동체 만들기 연도별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마을공동체 만들기 추진방향 및 주요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마을공동체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기본계획 및 인천시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행정지원 협의회 설치) 시장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전담하는 부서를 중심으로 각종 사업을 담당하는 관련 부서들이 잘

협조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 마을공동체 만들기 행정지원 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9조(마을별 주민협의회 구성·운영) ①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마을(지구)은 자체적으로 사업을 전담할 수 있는 주민협의회를 구성한다.

② 주민협의회는 주민회의를 통해 민주적으로 선출된 협의회장을 둔다.

③ 주민협의회는 명칭이나 구성, 역할 등 세부 사항은 사업마을(지구)별로 정한다.

④ 주민협의회는 주민의견을 반영한 마을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여 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시장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에 반영토록 노력한다.

제10조(사업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주민주도의 마을종합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주거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사업
3. 마을기업·사회적기업·협동조합 육성
4. 마을환경 보전 및 개선 사업
5. 마을 문화·예술 및 전통의 계승발전 사업
6. 마을일꾼 육성 및 활동지원과 교육사업
7. 마을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및 복지증진 사업
8. 마을공동체 만들기와 관련된 단체·기관 지원사업
9. 마을공동시설 개선사업
10. 그 밖에 마을공동체 만들기 활성화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11조(지원신청) ① 마을공동체 만들기 주체가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군수·구청장 등에게 서면으로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구청장은 사업신청을 받은 경우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사업비의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원된 사업비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았을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되었을 경우
5.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허위보고를 하였을 경우

제13조(형성재산의 사용)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에 의하여 형성된 재산을 타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단 매매·양도·교환·대여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4조(사무의 위임) ① 시장은 마을의 공익과 마을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구성된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4조에 따라 구청장·군수에게 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임하려면 미리 시설물의 소재지 구청장·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3장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

제15조(설치 및 기능) ① 마을공동체 만들기 정책 및 사업을 심의하고 발전방향을 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

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마을공동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지원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선정
4. 마을공동체 만들기 관련 사업이 지원대상과 범위
5.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분석·평가
6.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의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사업에 의해 형성된 재산을 타 용도로 사용
8. 그 밖에 위원회에서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자치행정국장 및 마을공동체 만들기 관련업무 실·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여성, 장애인, 저소득층, 다문화 등 다양한 의견 표출이 가능한 위원이 균형 있게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때 해당 분야의 남성 또는 여성 전문 인력이 부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촉직 위원 정수의 30%이상을 여성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1. 인천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인천시의원
2. 주민대표, 전문가 및 마을공동체 만들기에 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공동간사를 두고, 공동간사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업무 담당부서장과 민간위원 1인으로

로 한다.

제17조(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단, 위원 결원으로 인해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기타 해촉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2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시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관계부서의 협조)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전협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공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제23조(지원센터의 설치) 시장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원활하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24조(지원센터의 기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원센터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초조사 및 사업의 분석·평가·연구
3. 주민주도의 마을종합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지원
4.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계획 수립·실행 지원
5.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공모
6. 마을공동체 만들기 민간단체의 네트워크 사업
7. 마을공동체 만들기 일꾼 발굴 및 육성
8. 마을공동체 만들기 관련 교육, 홍보, 세미나, 국내·외 견학
9. 마을공동체 만들기 자원조사·관리
10. 그 밖에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5조(관리 및 운영) ① 시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지원센터가 민간위탁이 될 경우에는 제11조의 기능을 지원센터에서 수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할 수 있다.

③ 수탁기관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6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7조(위탁계약 해제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한 경우

2. 수탁기관이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수탁기관은 지체 없이 위탁받은 시설 및 축적된 지적재산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28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령 검토 및 발체사항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제9조, 제22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4조 ☐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 4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조 ☐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조, 제2조, 제10조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 당 없 음”
관련자료	“해 당 없 음”

관련법령 발췌사항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4조(공유재산의 관리와 사무의 위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공유재산을 관리·처분하되,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공유재산을 관리·처분하게 할 수 있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하여 그 재산을 관리·처분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재산관리관"이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공유재산의 관리·처분 사무에 필요한 비용의 처리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0.2.4>

[전문개정 2008.12.26]

□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파견근무) ① 임용권자는 그 업무수행과 관련된 행정 지원이나 연수, 그 밖에 능력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을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 공공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을 포함한다), 국내외의 교육기관·연구기관, 그 밖의 기관에 일정 기간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으며,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특수업무의 효율적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자치단체 외의 기관·단체의 임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 파견권자는 파견 사유가 소멸되거나 파견 목적이 달성될 가망이 없으면 그 공무원을 지체 없이 원래의 소속 기관에 복귀시켜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기관·단체에서 파견된 임직원은 직무상 행위를 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④ 공무원을 파견근무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기관·단체의 임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하는 경우 파견 사유·기간·절차와 파견기간 중의 복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2.31]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는 인천광역시(이하“시”라 한다)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간위탁”이라 함은 각종 법령에 규정된 시장의 사무 중 일부를 시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맡겨 그의 명의로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라 함은 시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제10조(지휘·감독) ① 시장은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휘·감독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무를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추진
 - 주민주도의 마을종합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주거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사업
 - 마을기업·사회적기업·협동조합 육성
 - 마을 문화·예술 및 전통의 계승발전 사업
 - 마을일꾼 육성 및 활동지원과 교육사업
 - 마을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및 복지증진 사업

2. 비용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제정조례에 명시한 마을공동체 만들기 활성화 사업 전체 추진

나. 추계 결과

- 총소요액 : 500,000천원

- 산출기초

(단위 : 천원)

구 분	기지원액	향후 소요액	추가소요액
자치단체자본보조 (군·구를 통해 채택된 공모사업)	0	260,000	
민간경상보조 (지원센터 위탁비)	0	240,000	
계		500,000	

다. 재원조달방안

- 일반회계 세출예산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비 고
소요액(백만원)	2,500	500	500	500	500	500	

4. 비용추계서 첨부 근거규정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3항

5. 작 성 자

기획행정위원회 홍 성욱 의원